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추계모형 등 추가〉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6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추계모형 등 추가 (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2호의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0. 11.

다. 회 부 일 :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예산 추계는 국가의 세수입 및 재정지출, 채무관리 등에 직결되는 경제전반에 매우 중요한 통계 중 하나임. 그리하여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세입예산 오차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며 재정정책의 오류 및 정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4년 동안 정부가 제시한 세입예산 추계에 대규모 오차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3년에는 당초 추계한 금액보다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세수추계의 대규모 오차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크며 ‘세수결손’ 시 중앙과 지방의 예산사업 중단을 비롯한 지연·축소·폐지 등의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 2023년 세수결손의 결과로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 전출금이나 예탁금, 이자지급유예 등 내부거래를 통해서 16.4조원을 메웠고, 지방교부세(금)를 18.6조원 미지급하였으며 부처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출조정 7.5조

원 등 45.7조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음. 이러한 국가 재정문제를 촉발시킨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하여 추계방식이 자의적이며 인구추계 등과 달리 국가통계품질관리 범위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 주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추계모형 등 추가 (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2호의2)

현행	개정안
<u><신설></u> ○ 예산안의 첨부서류(§34) – (생략) (제1호·제2호) – 세입예산 <u>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 사항을 포함한다)</u> (제2호의2) – (생략) (제3호~제16호)	○ 세입예산의 추계(§32의2) – 기재부장관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1항) –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포함사항(제2항) 1. <u>세입추계모형(세입추계모형이 전년도와 달라진 경우, 그 변동사항을 포함)</u> 2. <u>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u> 3. <u>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u> 4. <u>전년도 세수오차율 및 상반기 세수오차율</u> 5. <u>세입추계 개선사항</u> – <u>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통계법」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아야 함(제3항)</u> ○ 예산안의 첨부서류(§34) – (현행과 같음) (제1호·제2호) – 세입예산 <u>추계분석보고서</u> (제2호의2) – (현행과 같음) (제3호~제16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제34조제2호의2에 규정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새로운 가지조문(제32조¹⁾의2)으로 신설하면서 세입추계모형 등 포함사항을 추가·구체화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통계법」 제9조²⁾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 1)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 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④ 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법 시행령」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1.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통계
 2.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3.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
 4. 그 밖에 통계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나. 세수추계 방식 관련 현황³⁾

최근 3년간 국세수입의 본예산 대비 세수전망 오차가 30조원대 이상이고, 2023년 56조원, 2024년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국세 수입 전망을 위한 세목별 전망 산출 근거로 각 세목별 활용된 변수 등을 공개하였음.⁴⁾ 또한 202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시 ① 세수추계 모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AI를 기반으로 하는 추계모델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② IMF의 제언을 바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하여 총 부담세액을 전망하도록 법인세의 추계모형을 고도화하였음.⁵⁾

이와 관련하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계모형의 개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3년도 세입예산안 세수추계 시 정부는 2022년 7월까지의 세수실적, 진도비 등을 토대로 2022년 연간 세수를 재추계한 후 관련 경제지표(2023년 토지·건물가격 상승률 전망 등)의 증가율을 반영하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기준년

3)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p.23~26 참조

4)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2024. 9. 2.)

5)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2024. 9. 2.)

대비 증가율법' 역시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2023년 12조 1,637억원(△40.9%)의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추계방식을 다시 변경하여 2023년 9월 재추계한 2023년 연간 세수 전망치를 토대로(최신 정보 반영)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지표-세수 간 관계 체계적 반영)하여 세수추계를 실시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수전망에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세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최근 양도소득세 오차 현황]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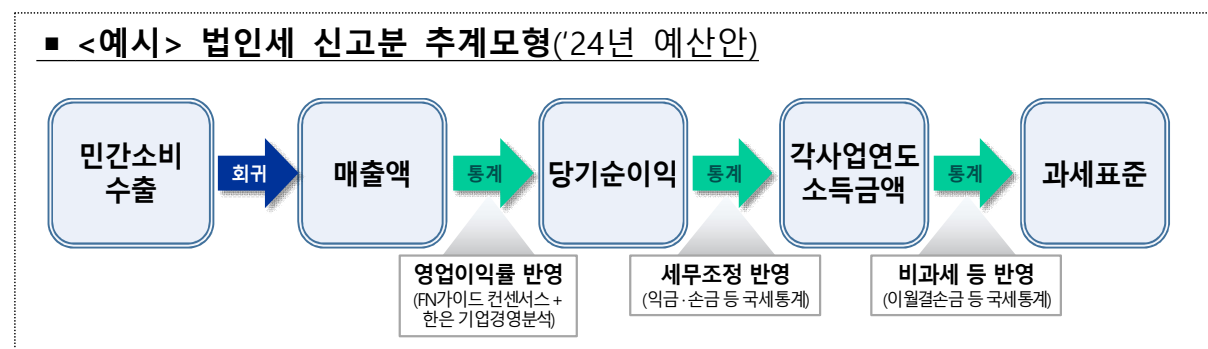
연도	본예산 (A)	징수실적 (B)	오차 (B-A)	오차율 (B-A)/B
2020년	167,621	236,558	68,937	29.1
2021년	168,857	367,072	198,215	54.0
2022년	224,380	322,333	97,953	30.4
2023년	297,197	175,560	△121,637	△40.9
2024년	224,165	166,852	△57,313	△25.6
2025년(예산안)	225,941			

자료: 기획재정부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3년도 세입예산안 세수추계 시 단순화된 회귀모형(거시변수로부터 매출액을 구한 뒤, 당기순이익등을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2024년 세입예산안 세수추계 시 변동성이 큰 상장기업의 실적 추정을 위해 향후 시장의 경기 변동 예측을 모두 반영한 증권시

장 실적 전망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수추계 모형을 보완하였음.

그러나 2023년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하반기 중간예납 감소 및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상장기업의 납세액 추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2024년 9월 세입 재추계 시 법인세 기준 14조 4,662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었음.



[최근 법인세 오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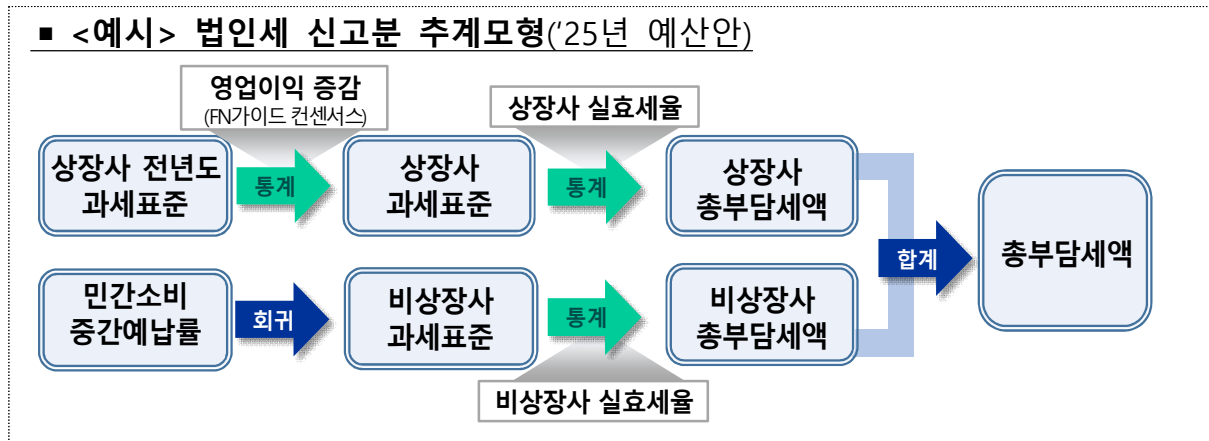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본예산 (A)	징수실적 (B)	오차 (B-A)	오차율 (B-A)/B
2020년	644,190	555,132	△89,058	△16.0
2021년	533,054	703,963	170,909	24.3
2022년	749,380	1,035,704	286,324	27.6
2023년	1,049,969	804,195	△245,774	△23.4
2024년	776,649	325,113	△151,536	△19.5
2025년(예산안)	885,013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2025년도 세입예산안 세수추계 시, 정부는 단계적 국세통계를 적용하는 대신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하고 기업 유형별로 실효세율을 활용해 충부담세액을 전

망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음. 특히 상장사는 영업이익 증감 전망 (증권사 컨센서스)등을 감안하고,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세 표준을 전망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다. 세수오차 관련 현황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⁶⁾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안

- 6)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등 총 19개의 서류를 나열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호의2에 규정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당초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아니었으나 2019년 4월 「국가재정법」이 개정⁷⁾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 가량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개정⁸⁾된 것임.

이와 함께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추계모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세수오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9년 및 2020년에는 오차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 이후 세수오차율이 증가하여 2023년 56조원, 2024년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함.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3060호)

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신 설>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3060호) 중 제안이유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의 결산 대비 오차율은 8.1%(본예산: 222.9조원, 결산: 242.6조원)로 2015회계연도(오차율: △1.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으로,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

[연도별 국세세입 본예산 및 수납실적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	282.7	343.4	400.5	367.3
실 적(B)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초과세수(C=B-A)	△3.3	19.6	23.1	25.4	△1.3	△6.5	61.3	52.6	△56.4	△30.8
세수오차율(C/A)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8.4

자료: 기획재정부

이렇게 세수오차가 크게 빗나가면 당초 계획된 세입에 비해 세출예산을 집행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기존 세출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추가적인 국가채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일부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추경 편성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세출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라. 검토의견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⁹⁾’는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어 그 실적을 평가하고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 추계모형 고도화 등 세수추계 주요 개선사항을 담고 있고, 세수추계 개선 전후 법인세의 세수오차도 비교하고 있음.

9) [참고2] 참조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내용]

I. 국세수입 1. 2023년 국세수입 실적평가 (1) 총괄 (2)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3) 주요 세목별 증감원인 2. 2024년 국세수입 여건 3.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1) 총괄 (2) 분석방법 및 전제 (3)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4) 주요 증감원인 4. 세수추계 개선사항 (1) 주요 개선사항 (2) 세수추계 개선 전후 추계결과 비교	II. 국세외수입 1. 2023년 국세외수입 실적평가 (1) 총괄 (2) 주요 항목별 증감원인 2. 2025년 국세외수입 예산안 (1) 총괄 (2) 주요 항목별 편성 근거
---	--

다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세입추계 모형 및 당해연도 세수 오차율을 담고 있지 않아, 세입추계 모형의 구조가 어떠한지, 당해연도 세수오차율¹⁰⁾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실제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부는 ‘세수추계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세수추계모형 고도화를 위해 “IMF에서 제안한 법인·양도 세수추계모형 및 세수추계 개선사항을 2025년 법인세 세수추계 개선에 활용하고 AI기반 추계모델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세수추계모형’이 어떠한고 그 개선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0) 다만, 전년도 세수오차율, 상반기 세수현황 및 진도율은 현재의 추계분석보고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당해연도 세수오차율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2022~2024년 당해연도 세수재추계를 실시하여 공개(8월 또는 9월경) 한 바 있으며 2024년 9월 국회에 보고한 「최근 경제 동향과 세수재추계 등 주요 현안」 자료에서 당해연도 세수 수정전망 실시를 정례화(매년 9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중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의 내용]

① 세수추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계절차 개선

- 세수추계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 민간위원장 + 정부위원(기재부,국세청, 관세청) + 민간위원(학계, 정책연구원 등)
- 국토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산시장 등 분야별 거시전망 논의 강화
- 업종·분야별 동향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장자문단* 별도 운영
 - * 세수영향이 큰 업종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 수시로 시장동향 청취
- 정부 외 연구기관 자체 세수전망치 공표
 - 조세재정연구원·KDI의 자체 세수전망치(8월 정책세미나)와 비교·분석을 통해 세수추계 결과 객관성 제고
- 업종별 대표기업 면담을 통한 업황진단 및 기업실적 전망 파악

② 세수추계 모형 고도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 세수추계 모형 개선 관련 국제협력 추진
 - IMF에서 법인·양도 세수추계 모형 및 세수추계 개선 제언 → '25년 법인세 세수추계 개선에 활용
- AI 기반 추계모형 활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AI·데이터 기반 주요모형 세수추계 방법론 개선 검토 중(~'24.12월)

자료 :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또한, 추계모형을 고도화한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도,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서 정부는 “상장사·비상장사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¹¹⁾하고 단계적 국세통계 적용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을 전망”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계모형

11) 상장사는 영업이익 증감 전망(증권사 컨센서스) 감안,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세표준 전망

이 어떠한지 알기는 어려움.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중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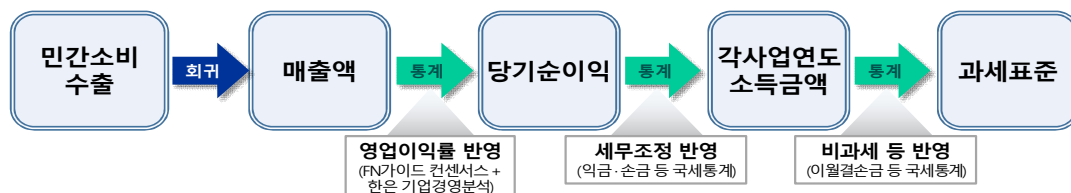
③ 법인세 추계모형 고도화

- (당초) 회귀모형으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이익률을 추정*해 실적 도출
→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등 국세통계 단계적으로 적용

* 상장사(FN가이드 컨센서스)와 비상장사(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가중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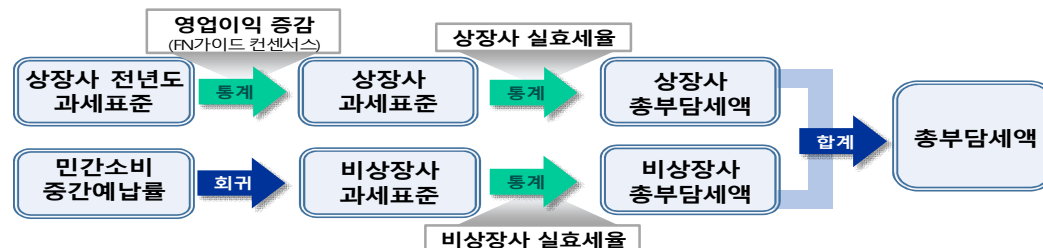
- 전체기업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을 추정하여 오차 발생 가능성 확대
- 최근 법인세 변동성 확대로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변동폭 확대 → 국세통계 단계적 적용 과정에서 추계오차가 확대

■ <예시>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4년 예산안)



- (개선) 상장사·비상장사 과세표준 각각 도출 → 단계적 국세통계 적용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 전망
- 상장사는 영업이익 증감 전망(증권사 컨센서스) 감안,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세표준 전망

■ <예시>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5년 예산안)



자료 :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상기한 문제인식에 따라 국회에서는 결산 심의 과정¹²⁾, 의원주최 토

12) 제278회국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8. 9. 18.), 제284회국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17.), 제389회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1. 7. 15.), 제417회 제1차 기획재정위

론회¹³⁾ 등에서 정부의 추계모형 등을 공유할 것을 수차례 개진한 바 있고,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도 추진¹⁴⁾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부 세입예산안의 작성근거가 되는 세입추계모형과 전년도 세수오차율 및 당해연도 상반기 세수오차율을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작성된 예산안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통계법」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여 추계분석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함께 제고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공개하고 있고, ‘추계모형’이란 개념이 불분명하고 추계방법의 기술적 사항에 불과하여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예산은 연간 기준이기에 ‘상반기 세수오차율’은 산출할 수 없고,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는 통계품질관리¹⁵⁾가 아닌 추계모형 고도화, 추계절차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는 입장임.

또한, 통계청은 세입예산은 경제전망 등을 바탕으로 한 추계치로 ‘현상’에 대한 품질진단 대상인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원회 (2024년 08월 27일) 등

13)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2022. 6. 21.

14) 용혜인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상대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진행’, 2023. 8. 24.

15)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는 주로 자료수집, 데이터 처리·분석, 이용자서비스 등 통계생산·서비스 과정의 정확성·일관성 등을 진단하는 것이어서, 세수추계 모형 평가 및 개선사항 발굴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하였음.

그러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입추계모형’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안¹⁶⁾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추계의 오차 폭을 줄이기 위해 세입추계모형을 변경한 사례가 있고, 세입추계모형은 기술적 사항이지만 세입추계 방법 중 중요사항이며, 세입추계모형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검증절차를 통해 그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상반기 세수오차율’ 대신 ‘상반기 세수진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수진도율은 계획 대비 세입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상반기 세수진도율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진도율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세수결손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도 이미 국세수입현황을 통해 매월 세수진도율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치이므로, 현상

16) 예컨대, “세입추계모형(세입을 예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식과 변수를 말한다)을 포함한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에 대한 수량적 정보를 가공하는 통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의견과 같이 「통계법」상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2조의2(세입예산의 추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입추계 모형(세입추계 모형이 전년도와 달라진 경우, 그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3.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4. 전년도 세수오차율 및 상반기 세수오차율 5. 세입추계 개선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법」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추계분석보고서

현행	개정안
<u>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u> 3. ~ 16. (생략)	3. ~ 16.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60

참고 1

세수추계 해외사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담당 기관	(행정부) 기획재정부	(의회) CBO (행정부) OMB	(독립기구) OBR	(독립기구) 세수추계 위원회	(행정부) 재무성	(행정부) 재무부	(행정부) 재무부
추계 방법론	■ 과세표준 [거시회귀] + 실효세율 [국세통계] * 법인, 중소 ■ 기준년대비 증가율법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총액기반 (과표×세율) * 법인소득세, 소비세 ■ 미시 시뮬레이션 - 과세표준 [거시모형] + 실효세율 [미시 세액계산] * 개인소득세, 급여세	■ 계량경제 방정식 및 경제변수 활용 방식 * 법인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 미시 시뮬레이션 - 과세표준 [거시모형] + 실효세율 [미시 세액계산] * 소득세, 상속세	※ 8개 기관 독립 추계 → 세목별 합의 도출 ■ 탄성치방식 * 소득세 ■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 법인세 ■ 추세연장 * 주세 * 출처 : IFO 경제 연구소('08)	■ 기준년대비 증가율법 * 법인세 - 기업수익 예측조사 ('22조사대상 14,370개) * 출처 : 조세·인지 수입예산 설명('22)	■ 탄성치방식 * 개인소득세 - 과세표준 [거시모형] + 탄성치 [미시 세액계산] * 출처 : '07예산안	■ 기준년대비 증가율법 (Mapping) * 법인세 ■ 경제계량 방정식 * 원천소득세 * 출처 : 재무부('12)
모형 공개 ¹⁾	공개 ²⁾ (추계산식 등)	비공개 * (의회) 비정기 보고서발간 (방법론서술) (행정부) 비공개	비공개 * '11년 1회 보고서발간 (방법론서술)	비공개	일부공개 * 예산안 설명자료에 방법론, 도출과정 서술	비공개	비공개 * '12년 1회 보고서발간 (방법론서술)
거시 전제 공개	공개	실물변수 (GDP, 물가, 실업률 등) 금융변수 (이자율 등)	실물변수 (GDP, 물가, 임금상승률 등) 금융변수 (이자율 등)	실물변수 (GDP, 실업률, 피용자보수 등) 금융변수 (이자율 등)	실물변수 (GDP, 물가, 실업률 등)	실물변수 (GDP, 물가, 실업률 등) 금융변수 (이자율 등)	실물변수 (GDP, 물가, 실업률 등) 금융변수 (환율 등)

주 1) 회귀계수 등 세부내역은 7개국 모두 비공개

2) 다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으며, 세수추계 산식, 주요 설명변수, 세법개정 세수효과 등을 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정책처 등에 한정하여 별도의 설명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XV.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I. 국 세 수 입

1 2023년 국세수입 실적 평가

(1) 총 괄

- (총국세) '23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 711억원**으로,
예산(400조 4,570억원) 대비 56조 3,859억원(△14.1%) 부족
-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333조 9,396억원**으로,
예산(390조 2,539억원) 대비 56조 3,143억원(△14.4%) 부족
-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0조 1,314억원**으로,
예산(10조 2,031억원) 대비 717억원(△0.7%) 부족

(단위 : 억원, %)

구 분	'22년 실적(A)	'23년		전년대비		예산대비	
		본예산(B)	실적(C)	(C-A)	비율	(C-B)	비율
○ 총 국 세	3,959,393	4,004,570	3,440,711	△518,682	△13.1	△563,859	△14.1
- 일반회계	3,851,596	3,902,539	3,339,396	△512,200	△13.3	△563,143	△14.4
- 특별회계	107,797	102,031	101,314	△6,483	△6.0	△717	△0.7

- (주요 원인) '22년 4분기 이후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
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기간세목이 큰 폭으로 감소
- 대외여건 악화로 반도체 등 '22년 하반기 기업실적이 급감,
'23년 경기 둔화로 민간소비·수입 등 부진
-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영향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감소

[2]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본예산	'23년 실적	'23년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4,004,570	3,440,711	△563,859	△14.1
○ 소 득 세	1,318,632	1,158,330	△160,302	△12.2
• 종합소득세	247,255	214,368	△32,887	△13.3
• 양도소득세	297,197	175,560	△121,637	△40.9
• 근로소득세	606,216	591,442	△14,774	△2.4
○ 법 인 세	1,049,969	804,195	△245,774	△23.4
○ 상속증여세	171,274	146,341	△24,933	△14.6
○ 부가가치세	832,035	737,749	△94,286	△11.3
○ 개별소비세	101,943	88,209	△13,734	△13.5
○ 증권거래세	49,739	60,803	11,064	22.2
○ 인 지 세	8,158	7,969	△189	△2.3
○ 과년도수입	47,926	56,999	9,073	18.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	108,436	△3,035	△2.7
○ 관 세	107,237	72,883	△34,354	△32.0
○ 교 육 세	47,022	51,516	4,494	9.6
○ 종합부동산세	57,133	45,965	△11,168	△19.5
○ 주 세	32,151	35,686	3,535	11.0
○ 농어촌특별세	69,880	65,628	△4,252	△6.1

(3) 주요 세목별 증감원인

☐ (양도소득세 : △12.2조원)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

*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1.11~'22.10) 72.4 → ('22.11~'23.10) 48.9 <△32.4%>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1.11~'22.10) 57.1 → ('22.11~'23.10) 53.0 <△7.1%>

☐ (근로소득세 : △1.5조원) 주요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상여금* 감소 등 영향

*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상승률(%): ('22) 10.4 → ('23) △2.9

☐ (법인세 : △24.6조원) '22 ~ '23.上 기업실적 감소*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1) 119.7 → ('22) 81.7 <△31.8%>
('22上) 63.6 → ('23上) 18.8 <△70.4%>

☐ (부가가치세 : △9.4조원) 수입 감소* 등

* 수입액 변동: ('22) 7,314억불 → ('23) 6,426억불 <△12.1%>

☐ (증권거래세 : +1.1조원)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 증권거래대금 변동: ('22) 3,914조원 → ('23) 4,809조원 <+22.9%>

☐ (교통세 : △0.3조원) 유류세 한시 인하* 등

* ('23.1~12) 휘발유 △25%, 경유·LPG △37%

☐ (관세 : △3.4조원) 수입감소* 등

* 수입액 변동: ('22) 7,314억불 → ('23) 6,427억불 <△12.1%>

☐ (교육세 : +0.4조원) 금융·보험업자 수익 증가 등

☐ (종합부동산세 : △1.1조원) 공시지가 하락*, 세율인하 등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전년대비): △18.6%

- ('24년 세입여건) 작년 경기둔화의 여파로 법인세 등이 부진한 가운데, 하반기 경기·자산시장 회복 여부에 따른 세수상황 개선 기대
- ('24.6월 누계실적) 전년대비 △10.0조원 감소한 168.6조원

(단위 : 조원, %)

구 분	'23.6월 누계실적(A)	'24.6월 누계실적(B)	전년동기 대비 (B-A)	비율
○ 총 국 세	178.5	168.6	△10.0	△5.6
- 일반회계	173.6	163.5	△10.1	△5.8
(소득세)	57.9	58.1	0.2	0.3
(법인세)	46.7	30.7	△16.1	△34.4
(상속증여세)	7.9	7.9	△0.0	△0.2
(부가세)	35.7	41.3	5.6	15.7
(증권거래세)	3.0	2.7	△0.3	△9.5
- 특별회계	5.0	5.0	0.1	1.8

○ '23년 경기둔화 여파에 따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감소가 주요 원인

- (법인세) 글로벌 반도체 경기침체, 세계교역 부진 등 어려웠던 대외여건으로 '23년 기업실적이 대폭 악화

* '23년 상장사 영업이익 전년 대비 증감(개별, %): (코스피) △45.0 / (코스닥) △39.8

- (소득세) '23년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1.0조원), 근로소득세(△0.7조원) 감소에도 이자소득세 호조(+1.7조원) 등으로 소폭 증가

- (부가세) 전년 대비 민간소비 개선 등으로 증가

3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1) 총괄

□ (총국세) '25년 국세수입은 382조 4,296억원으로 전망

○ '24년 예산(367조 3,140억원) 대비 4.1%(15조 1,156억원) 증가 예상

(단위 : 억원, %)

구분	'23년 실적	'24년 예산(A)	'25년 예산(B)	전년 예산대비 (B-A)	비율
○ 총 국 세	3,440,711	3,673,140	3,824,296	151,156	4.1
- 일반회계	3,339,396	3,561,182	3,718,050	156,868	4.4
(소득세)	1,158,330	1,163,084	1,280,066	22,461	1.8
(법인세)	804,195	776,649	885,013	108,364	14.0
(부가세)	737,749	814,068	880,201	66,133	8.1
- 특별회계	101,314	111,958	106,246	△5,712	△5.1

□ (회계별) '25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71조 8,050억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 6,246억원 전망

○ 일반회계는 '24년 예산(356조 1,182억원) 대비 4.4%(15조 6,868억원) 증가

○ 특별회계는 '24년 예산(11조 1,958억원) 대비 △5.1%(△5,712억원) 감소

□ (주요 원인) '24년 기업실적 호조, '25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세목 증가 예상

○ (소득세) 부동산 시장 거래·가격 회복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가, 임금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 예상

○ (법인세) 반도체 업황 회복 등 주요기업 실적 큰 폭 개선에 따라 법인세 증가 예상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조원) : ('23.上) 19.1 → ('24.上) 63.3 <+44.2조원>

○ (부가세) 소비증가·물가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증가 예상

[2] 분석방법 및 전제

□ 분석방법

- 경제지표 전망치를 추계모형에 반영하여 세목별 추계

구 분	설명변수
종합소득세	• 경상 GDP
양도소득세	• 토지가격·거래, 주택매매가격·거래,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증권거래대금
근로소득세	• 취업자수, 상용근로자수, 명목임금
이자소득세	• 수신금리
법 인 세	• 상장사 영업이익,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수신금리, 법인금융자산
상속증여세	• 토지·주택가격,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개인금융자산 (상속세는 70세 이상 사망자수 추가 감안)
부가가치세	•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개별소비세	• 에너지수요전망, 담배 반출량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대금
교 통 세	• 휘발유·경유 수요전망
관 세	• 수입, 환율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지가 상승률
주 세	• 맥주·탁주 출고량

□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제

구 분	'24년 전망	'25년 전망
경상성장률 (%)	5.5	4.5
실질성장률 (%)	2.6	2.2
GDP def.	2.9	2.3
민간소비증가율 (%)	1.8	2.3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2.1
취업자증감 (만명)	23	17
명목임금 상승률 (%)	3.1	2.9
수출 증가율 (%)	9.0	6.0
수입 증가율 (%)	2.0	4.5
환율(원/\$)	1,350	1,380

[3]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단위 : 억원, %)

	'23년 실적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24년 예산 대비	
				증감액	%
총 국 세	3,440,711	3,673,140	3,824,296	151,156	4.1
○ 소 득 세	1,158,330	1,257,605	1,280,066	22,461	1.8
· 근로소득세	591,442	620,327	647,310	26,983	4.3
· 종합소득세	214,368	230,552	225,941	△4,611	△2.0
· 양도소득세	175,560	224,165	206,011	△18,154	△8.1
· 이자소득세	52,068	49,128	59,762	10,634	21.6
· 배당소득세	40,623	39,038	46,757	7,719	19.8
○ 법 인 세	804,195	776,649	885,013	108,364	14.0
○ 상 속 증 여 세	146,341	146,566	127,879	△18,687	△12.7
○ 부 가 가 치 세	737,749	814,068	880,201	66,133	8.1
○ 개 별 소 비 세	88,209	101,945	96,663	△5,282	△5.2
○ 증 권 거 래 세	60,803	53,829	38,454	△15,375	△28.6
○ 인 지 세	7,969	8,505	9,085	580	6.8
○ 과 년 도 수 입	56,999	56,969	63,931	6,962	12.2
○ 교통에너지환경세	108,436	153,258	151,048	△2,210	△1.4
○ 관 세	72,883	89,065	84,093	△4,972	△5.6
○ 교 육 세	51,516	61,625	60,402	△1,223	△2.0
○ 종합부동산세	45,965	41,098	41,215	117	0.3
○ 주 세	35,686	35,759	32,093	△3,666	△10.3
○ 농어촌특별세	65,628	76,199	74,153	△2,046	△2.7

[4] 주요 증감원인

- 경제성장률, 임금 및 '24년 기업실적 호조 등은 증가요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은 감소요인

① 경기회복 및 임금·금리 상승

- (근로소득세) 주요기업 성과급 개선 등 임금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도 안정적으로 증가 예상

* 명목임금상승률(%): ('24^e) 3.1 ('25^e) 2.9 / ** 취업자증감(만명): ('24^e) 23 ('25^e) 17

- (부가가치세) 대내외 여건 개선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 및 수입 증가 예상

* 민간소비증가율(%) : ('24^e) 1.8 ('25^e) 2.3 / ** 수입 증가율(%) : ('24^e) 2.0 ('25^e) 4.5

② '24년 기업실적 호조

- (법인세) 반도체 등 주요기업 중심*으로 '24년 기업실적은 '23년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조원) : ('23.上) 19.1 → ('24.上) 63.3 <+44.2조원>

- (배당소득세) 상장사 실적 개선으로 배당금 증가 예상

③ 자산시장 불확실성 지속

- (양도소득세) 부동산 시장 여건 개선이 예상되나, 금리 등 불확실성 상존

* '24.1~6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3.9 <전년동기비 △6.5%>

'24.1~6월 주택매매거래량(만호): 31.1 <전년동기비 +13.1%>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증권거래대금 회복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증권거래세율(%) : [코스피] ('24) 0.03 → ('25) 0.00, [코스닥] ('24) 0.18→ ('25) 0.15

3 세수추계 개선사항

(1) 주요 개선사항

① 세수추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계절차 개선

- 세수추계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 민간위원장 + 정부위원(기재부,국세청, 관세청) + 민간위원(학계, 국책연구원 등)
- 국토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산시장 등 분야별 거시전망 논의 강화
- 업종·분야별 동향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장자문단* 별도 운영
 - * 세수영향이 큰 업종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 수시로 시장동향 청취
- 정부 외 연구기관 자체 세수전망치 공표
 - 조세재정연구원·KDI의 자체 세수전망치(8월 정책세미나)와 비교·분석을 통해 세수추계 결과 객관성 제고
- 업종별 대표기업 면담을 통한 업황진단 및 기업실적 전망 파악

② 세수추계 모형 고도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 세수추계 모형 개선 관련 국제협력 추진
 - IMF에서 법인·양도 세수추계 모형 및 세수추계 개선 제언 → '25년 법인세 세수추계 개선에 활용
- AI 기반 추계모형 활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AI·데이터 기반 주요모형 세수추계 방법론 개선 검토 중(~'24.12월)

③ 법인세 추계모형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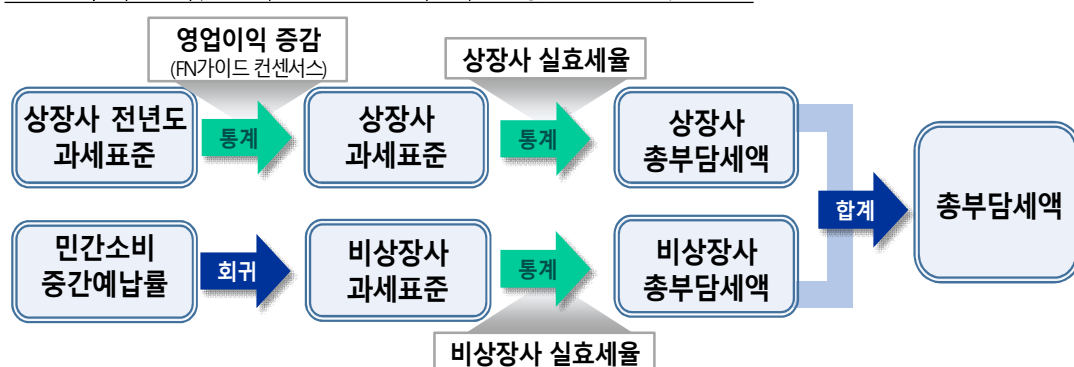
- (당초) 회귀모형으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이익률을 추정*해 실적 도출 →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등 국세통계 단계적으로 적용
 - * 상장사(FN가이드 컨센서스)와 비상장사(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가중 평균
- 전체기업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을 추정하여 오차 발생 가능성 확대
- 최근 법인세 변동성 확대로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변동폭 확대 → 국세통계 단계적 적용 과정에서 추계오차가 확대

■ <예시>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4년 예산안)



- (개선) 상장사·비상장사 과세표준 각각 도출 → 단계적 국세통계 적용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 전망
- 상장사는 영업이익 증감 전망(증권사 컨센서스) 감안,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세표준 전망

■ <예시>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5년 예산안)



[2] 세수추계 개선 전후 추계결과 비교

- 개선사항이 반영된 '25년 세입예산안 법인세 추계모형으로
과거 5년간 세수를 재추계해본 결과, 추계오차가 상당폭 축소

(단위 : 억원, %)

구 분	세수실적	기존 추계모형	오차		개선 추계모형	오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년	721,743	819,305	97,562	13.5	760,154	38,411	5.3
2020년	555,132	541,916	△13,216	△2.4	541,592	△13,540	△2.4
2021년	703,963	761,626	57,663	8.2	695,025	△8,938	△1.3
2022년	1,035,704	1,003,235	△32,469	△3.1	991,299	△44,405	△4.3
2023년	804,195	868,978	64,783	8.1	845,689	41,494	5.2

Ⅱ. 국 세 외 수 입

1 2023년 국세외수입 실적 평가

(1) 총 괄

□ 2023년 국세외수입 실적은 **229조5,748억원**

○ 본예산(225조 2,181억원) 대비 4조 3,567억원(1.9%) 초과

(단위: 억원, %)

구 분	'23년 예산(A)	'23년 결산(B)	차이 (B-A)	비율
□ 국세외수입	2,252,181	2,295,748	43,567	1.9
○ 예 산	249,519	284,882	35,363	14.2
- 일반회계	97,192	127,536	30,344	31.2
- 특별회계	152,327	157,346	5,019	3.3
○ 기 금	2,002,662	2,010,866	8,204	0.4

□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적은 12조 **7,536**억원으로

○ 본예산(9조 7,192억원) 대비 3조 344억원(31.2%) 초과

□ 특별회계 세외수입 실적은 15조 **7,346**억원으로

○ 본예산(15조 2,327억원) 대비 5,019억원(3.3%) 초과

□ 기금수입 실적은 **201조 866**억원으로

○ 본예산(200조 2,662억원) 대비 8,204억원(0.4%) 초과

[2] 주요 항목별 증감원인

【 세외수입(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산수입: 3.4조)**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예산대비 6,098억원 초과

* 기재부 일반회계 한국은행잉여금(억원) : (예산) 12,725 → (결산) 17,546 (+4,821)

- **(경상이전수입: 12.2조)** 보조금 집행 후 반납 증가 등으로 예산대비 2조 3,246억원 초과

* 복지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억원) : (예산) 4,745 → (결산) 10,662 (+5,917)

- **(재화·용역판매수입: 2.6조)** 우체국보험 저축성보험 비중 일시적 증가에 따른 부가보험료 감소 등으로 예산대비 △2,680억원 부족

* 과기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억원) : (예산) 10,403 → (결산) 9,652 (△751)

- **(수입대체경비수입: 0.3조)** 여권·사증 발급 증가 등으로 예산대비 337억원 초과

* 외교부 일반회계 면허료및수수료(억원) : (예산) 1,308 → (결산) 1,555 (+247)

- **(관유물매각대: 1.1조)** 국토부 유희 토지자산 매각 감소 등으로 예산대비 △795억원 부족

* 국토부 교특 철도계정 토지매각대(억원) : (예산) 827 → (결산) 676 (△147)

- **(융자금 회수 등: 0.8조)** 융자금 조기회수율 하락 등으로 예산대비 △986억원 부족

* 산업부 예특 기타민간융자금회수(억원) : (예산) 5,458 → (결산) 4,408 (△1,050)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8.0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대비 1조 1,376억원 초과

* 과기부 우특 금융영업이자수입(억원) : (예산) 21,995 → (결산) 33,286 (+11,291)

【 기금 수입 】

- **(국민연금기금: 88.3조)** 운용수익 증가로 예산대비 7조 511억원 초과
 * 국민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억원) : (예산) 246,151 → (결산) 298,389 (+52,23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6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감소 등으로 예산대비 △4,897억원 부족
 * 사학기금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억원) : (예산) 2,543 → (결산) 1,228 (△1,316)
- **(공공자금관리기금: 0.7조)** 시장금리 상승 등 여유자금 운용여건 개선으로 예산대비 1,519억원 초과
 *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억원) : (예산) 1,644 → (결산) 5,225 (+3,581)
- **(복권기금: 6.8조)** 미수령당첨금 증가 등으로 예산대비 77억원 초과
 * 복권기금 민간출연금(억원) : (예산) 549 → (결산) 627 (+79)
- **(국민체육진흥기금: 2.2조)** 투표권사업 매출 증대 등 영향으로 예산대비 905억원 초과
 * 체육기금 기타영업외접수익(억원) : (예산) 18,124 → (결산) 19,084 (+960)
- **(농지관리기금: 1.3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 감소 등으로 예산대비 △6,360억원 부족
 * 농지기금 법정부담금(억원) : (예산) 11,825 → (결산) 8,040 (△3,785)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조)** 보조사업비 실집행률 증가로 인한 정산잔액 감소 등으로 예산대비 △1,802억원 부족
 * 농안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억원) : (예산) 1,207 → (결산) 869 (△338)
- **(공무원연금기금: 20.0조)** 회관 및 임대주택 등 건물임대 수익 증가 등으로 예산대비 1,582억원 초과
 * 공무원연금기금 건물대여료(억원) : (예산) 4,876 → (결산) 7,495 (+2,618)
- **(관광진흥개발기금: 1.1조)** 출국납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대비 △1,390억원 부족
 * 관광진흥개발기금 법정부담금(억원) : (예산) 5,894 → (결산) 4,994 (△899)

[1] 총괄

□ 2025년 국세외수입 세입예산안 규모는 269조 3,953억원

○ 2024년 예산(244조 9,007억원) 대비 24조 4,947억원(10.0%) 증가

(단위: 억원, %)

구분	'23년 결산	'24년 예산(A)	'25년 예산안(B)	전년대비 (B-A)	비율
□ 국세외수입	2,295,748	2,449,007	2,693,953	244,947	10.0
○ 예산	284,882	281,959	365,867	83,908	29.8
- 일반회계	125,736	111,947	187,128	75,181	67.2
- 특별회계	157,346	170,012	178,739	8,728	5.1
○ 기금	2,010,866	2,167,048	2,328,086	161,039	7.4

□ 일반회계는 18조 7,128억원으로

○ 2024년 본예산(11조 1,947억원) 대비 7조 5,181억원(67.2%) 증가

□ 특별회계는 17조 8,739억원으로

○ 2024년 본예산(17조 12억원) 대비 8,728억원(5.1%) 증가

□ 기금은 232조 8,086억원으로

○ 2024년 본예산(216조 7,048억원) 대비 16조 1,039억원(7.4%) 증가

[2] 주요 항목별 편성 근거

【 세외수입(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산수입: 6.3조)**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을 반영한 잉여금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2조 5,762억원 증가

* 기재부 일반회계 한국은행잉여금(억원) : ('24) 16,300 → ('25안) 42,000 (+25,700)

- **(경상이전수입: 12.7조)**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1조 1,895억원 증가

* 경찰청 일반회계 과태료(억원) : ('24) 11,341 → ('25안) 13,243 (+1,902)

- **(재화·용역판매수입: 2.9조)** 과기부 수입보험료 성장 추세 등을 감안하여 '24년 대비 116억원 증가

* 과기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억원) : ('24) 10,611 → ('25안) 11,055(+443)

- **(수입대체경비수입: 0.2조)** 여권 및 사증 발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24년 대비 △157억원 감소

* 외교부 일반회계 면허료및수수료(억원) : ('24) 1,324 → ('25안) 1,042 (△282)

- **(관유물매각대: 5.3조)** 국세 물납주식 매각 계획 등을 반영하여 '24년 대비 4조 3,830억원 증가

* 기재부 일반회계 국세물납주식매각대(억원) : ('24) 534 → ('25안) 37,532 (+36.999)

- **(융자원금 회수 등: 0.8조)** 융자회수금 조기 상환 감소 등으로 '24년 대비 △171억원 감소

*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억원) : ('24) 558 → ('25안) 341 (△217)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8.3조)** 우체국 예금 및 우편사업 수입 증대 등으로 '24년 대비 2,634억원 증가

* 우체국 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이자수입(억원) : ('24) 31,535 → ('25안) 33,352 (+1,817)
우체국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사업수입(억원) : ('24) 32,602 → ('25안) 33,389 (+787)

【 기금수입 】

- **(국민연금기금: 95.8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7조 8,943억원 증가

* 국민연금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억원) : ('24) 265,229 → ('25안) 336,637 (+71,408)

- **(주택도시기금: 25.9조)** 융자지원 상환 예상금액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2조 3,936억원 증가

* 주택도시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억원) : ('24) 184,273 → ('25안) 200,904 (+16,631)

- **(공무원연금기금: 23.1조)**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부담금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1조 1,524억원 증가

* 공무원연금기금 자치단체연금부담금(억원) : ('24) 127,832 → ('25안) 135,504(+7,672)

- **(고용보험기금: 21.3조)** 기여금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2조 8,823억원 증가

* 고용보험기금 사회보장기여금(억원) : ('24) 177,482 → ('25안) 206,072 (+28,590)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2조)** 기여금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4,477억원 증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보장기여금(억원) : ('23) 94,185 → ('25안) 98,350 (+4,165)

- **(전력산업기반기금: 3.1조)** 부담금 개편 등의 영향으로 '24년 대비 △4,676억원 감소

*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억원) : ('24) 32,028 → ('25안) 26,880 (△5,148)

- **(국유재산관리기금: 2.0조)** 결산 평균액 등을 반영하여 '24년 대비 △143억원 감소

*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억원) : ('24) 731 → ('25안) 503 (△228)

- **(방송통신발전기금: 0.6조)** 부담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24년 대비 △255억원 감소

* 방송통신진흥기금 법정부담금(억원) : ('24) 6,092 → ('25안) 5,633 (△458)

참 고

국세외수입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예산안	'24 대비
	본예산	본예산		
◇ 세외수입 합계	2,252,181	2,449,007	2,693,953	244,947
□ 예산수입	249,519	281,959	365,867	83,908
○ 일반회계	97,192	111,947	187,128	75,181
▪ 재산수입	25,949	28,827	55,536	26,709
▪ 경상이전수입	56,708	69,133	80,726	11,593
▪ 재화용역판매수입	11,018	10,418	10,543	125
▪ 수입대체경비수입	2,307	2,270	2,131	△140
▪ 관유물매각대	1,206	1,295	38,188	36,893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	4	4	1
○ 특별회계	152,327	170,012	178,739	8,728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8,869	80,736	83,370	2,634
▪ 재산수입	2,776	8,506	7,650	△856
▪ 경상이전수입	42,770	46,039	46,340	301
▪ 재화용역판매수입	17,671	18,055	18,046	△9
▪ 수입대체경비수입	44	112	94	△18
▪ 관유물매각대	11,139	7,974	14,820	6,846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059	8,590	8,419	△171
□ 기금수입	2,002,662	2,167,048	2,328,086	161,039
○ 사회보장성	1,146,455	1,237,930	1,356,258	118,327
▪ 국민연금기금	812,556	878,979	957,922	78,943
▪ 고용보험기금	176,832	184,245	213,068	28,823
▪ 산재보험기금	96,610	107,381	111,858	4,477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0,457	67,325	73,409	6,084
○ 사회보장성 외	856,207	929,118	971,829	42,711
▪ 주택도시기금	219,442	235,078	259,014	23,936
▪ 공무원연금기금	198,006	219,841	231,365	11,524
▪ 복권기금	68,274	73,630	77,645	4,015
▪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46,026	49,790	54,847	5,057
▪ 국민건강증진기금	29,584	31,040	32,517	1,477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8,525	32,763	37,347	4,584
▪ 공적자금상환기금	26,184	42,810	38,198	△4,612

